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규정

제정 1999. 8. 28. 개정 2000. 2. 29.
개정 2009. 11. 6. 개정 2011. 2. 25.
개정 2011. 5. 30. 개정 2012. 4. 19.
개정 2012. 11. 12. 개정 2013. 3. 8.
개정 2014. 4. 7. 개정 2014. 11. 11.
개정 2016. 2. 25. 개정 2018. 6. 8.
개정 2020. 3.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대학원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산업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2조(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①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산업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 행정실장 및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1. 5. 30, 2013. 03. 08)

② 총장이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교직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2. 대학원 각종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입 학

제5조(선발시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시기와 방법은 모집 시 마다 공고한다.

제6조(학과별 모집정원) 학과별 모집정원은 전체 입학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5. 30)

제7조(입학지원 서류)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지원 서류는 매 모집 시에 모집 요강에 정한다. (개정 2011. 2. 25)

제8조(입학시험) ① 대학원에 지원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1. 2. 25)

1. 전공교과목에 대한 구술평가(개정 2016.2.25.)

2. 면접평가(개정 2016.2.25.)

3. 그 밖에 서류심사(신설 2000. 2. 29)

② (삭제 2016.2.25.)

③ 제1항에 관한 평가방법은 매 모집시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개정 2000. 2. 29)

제9조(특별전형) ① 입학 전형에 있어서 대학원의 설립 목적과 교육 이념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기준, 전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0조(합격자 결정) 입학시험 합격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장이 이를 확정·발표한다.

제11조(입학·등록) ①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한다.(개정 2011. 2. 2, 2018.6.8.)

② 학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원 수료 후 무논문학위 취득을 위하여 수료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6.8.)

제4장 교육과정.개강교과목.수강신청.선수교과목.학점교류 및 성적평가

제12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과정은 공통교과목과 전공교과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② 교과목은 3학점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13조(개강교과목) ① 각 학과 주임교수는 교육과정에 의하여 매 학기 개강교과목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공고한다.

② 개강교과목으로 제출한 교과목일지라도 그 교과목이 다른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때에는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개강교과목의 강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기준 등의 심의를 거쳐 비전임 교원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1. 11)

④ 각 학과의 전임교원이 매 학기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은 2개 교과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수강신청 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0)

제14조(수강신청 및 교과이수) ① 학생은 매 학기 개강교과목에 의하여 등록기간 내에 학과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개시 후 2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매 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은 3학점을 추가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④ 논문제 또는 무 논문제의 선택은 입학 후 6개월 이내에 하며, 변경은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4학기 개시 전 1회에 한한다.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 5. 30)(개정 2012.04.19., 2014.4.7., 2016.2.25.)

구 분	공통교과목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논 문 제	3 ~ 12	12 ~ 21	24
무 논문제	3 ~ 12	18 ~ 27	30

제15조(폐강) 교과목 당 수강 인원이 2명 이하일 때에는 개강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강할 수 있다.

제16조(선수교과목) 삭제(2020.3.11.)

제17조(학점의 교류 및 인정) ① 학칙 제27조에 따라 학생이 이 대학원과 학점교류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 기간전에 교류과목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대학원장과 수강을 원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5. 30)

제18조(재 이수) 취득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는 재 이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과목의 전 성적은 무효이고 재 이수 학기의 성적이 그 교과목의 성적이 된다.

제19조(성적평가) ① 교과목별 학업 성적은 시험 또는 실험 및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 기말시험으로 실시하며 그 외에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실험 및 연구보고서는 기말시험 종료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매 학기 교과목별 출석시수가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에 미달된 경우의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장 지도교수, 논문지도위원회

제20조(지도교수) ① 학과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6개월 이내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학교 생활 및 논문을 지도할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도교수 1명당 지도 학생수는 매 학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논문지도위원회) ①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상 지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과 주임교수와 협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 2명 이상으로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2. 11. 12, 2016.2.25.)

제6장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제22조(시험시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시행하며 대학원장은 시험실시 30일전에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요강을 확정.공고한다.

제23조(시험위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2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은 3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으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5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은 각 학과의 전공교과목 3과목 이상으로 하며 시험과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종합시험은 4학기 이상 등록하여 18학점(성적 평균등급 B^o)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개정 2016.2.25.)

③ 종합시험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26조(재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한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제출 및 심사

제2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 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의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당해 학기까지 이수 예정인 학생으로서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제28조(학위논문 제출기한) 삭제 (개정 2011. 5. 30, 2016.2.25.)

제29조(논문작성계획서 제출) 학위논문 제출예정자는 논문제출 6개월 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위논문 제출시기) ① 심사용 논문은 5월 및 11월까지 소정의 서류와 심사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를 완료한 논문은 6월 30일 및 12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학위논문 작성) ①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논문은 표지.속표지.인준서.목차.영문.본문.참고문헌.부록 순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학원장 따로 정하는 “논문작성 요령”에 의한다.

③ 학위논문 작성, 보고, 발표 등에 있어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 2. 25)

제32조 (학위논문 제출 부수) ① 심사용 학위논문은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완료한 학위논문은 인쇄본 5부와 전자논문 디스켓 4매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 5. 30)

제33조 (학위논문심사위원회) ①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위촉에 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할 수 있다.

④ 대학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34조(학위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회 위원장 주관하에 논문공개 발표회를 거친 후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한다.

② 논문심사는 초심(구술시험 병행)과 종심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초심에서 지적된 수정사항의 수정.보완 여부의 확인을 종심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 또는 구술시험에 3회 이상 불합격한 학생은 논문제출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학위논문 공개발표) ① 학위논문 공개발표는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해당 학과교수와 소속대학원생이 참석하여 실시한다.

② 공개발표 후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발표요지와 질의 및 답변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학위논문 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가” 또는 “부”로 판정한다.

② 학위논문 심사의 통과에서는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가”의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제37조(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은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이 행한다

② 구술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③ 구술시험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제38조 (논문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학위논문심사 종료 후 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의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8장 학위수여 및 수료인정

제39조(학위수여) ① 대학원에서 소정의 수료 학점을 취득하고 제27조의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8.6.8.)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논문의 심사와 구술고사에 합격한 사람
2. 수료에 의한 학점 이외에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1호>서식,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 학위기를 수여한다. (신설 2011. 2. 25, 2018.6.8.)

제39조의2(학위수여 취소) 연구부정행위로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순천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산업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 6. 8.)

제40조(수료인정) 수료가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의 2(수업연한단축) ① 학칙 제18조 제4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 할 때에는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6)(개정 2013. 3. 08, 2018. 6. 8.)

② (삭제 2013. 03. 08)

제9장 장학금

제41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등록금 재원의 장학금과 그 밖의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한다.

② 장학금 규모,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기준은 순천대학교장학금지급 및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부 칙(1999. 8.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순천대학교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0. 2. 29)

이 규정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는 201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2. 25)

이 규정은 200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4조제4항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1개 학기 이하를 수료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한 경우에는 2011학년도 부터 적용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부 칙(2012. 4.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03. 0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제4항은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 11. 1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6.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아래의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논문 :

년 월 일

순천대학교산업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 천 대 학 교 총 장(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 순천대 석

석제 호

학 위 기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 순천대 석

제 호

수 료 증 서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학과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산업대학원장(학위) ○ ○ ○ (인)

위의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순천대학교 총장(학위) ○ ○ ○ (인)